

(주)다이나믹디자인 기업지배구조 헌장

(Dynamic Design Corporate Governance Charter)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헌장은 (주)다이나믹디자인이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공생"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원칙과 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본 헌장은 ESG 경영을 지배구조 전반에 내재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 및 이해관계자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헌장은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주요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의 지침이 된다.

제 2 장 주주권 보호

제 3 조(주주의 권리)

- 주주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회사의 존립 또는 주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하며, 회사는 주주의 권익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고 투명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1 주 1 의결권의 원칙을 따르며, 모든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도 등 주요 구조변경에 반대할 경우, 공정한 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법령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

5. 회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법령에 따라 보장되도록 한다. 또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지배주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제 4 조(주주의 책임)

1.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주주총회)

1.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다양한 의제 또는 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결정시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때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사회 리더십

제 6 조(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1.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심의하고,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2.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지며, 경영진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면서도, 견제 및 균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3.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이해상충 행위를 감시하고, 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내부절차를 점검한다.

4. 이사회는 주요 리스크의 사전 인지 및 대응을 위하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한다.
5.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권 보호 활동이 전체 주주이익에 부합되도록 감시하며,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한다.
6. 이사회는 경영진 및 이사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적절한 정보 보고와 논의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며, 중장기 전략 실행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부 환류체계를 점진적으로 마련한다.
7. 이사회는 그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제 7 조(이사의 역할과 책임)

1. 이사는 선관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3. 이사는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4.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 3 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8 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회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다양성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2.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제 9 조(사외이사)

1. 사외이사는 경영진, 최대주주와 독립적인 자로서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회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임한다.
3. 사외이사는 취임승낙 시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가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4.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제 10 조(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는 분기별 1 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2. 이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둔다.
3.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 보관한다.
4.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5. 이사는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6.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8. 사외이사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내·외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9.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별 이사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개별 이사의 평가결과는 보수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 11 조(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기구

제 12 조(감사)

1. 감사는 회사와 종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감사는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여야 한다.
3. 감사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검사,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의 사후보고 등의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4. 회사는 감사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하며,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한다.
5. 감사는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6. 감사는 언제든지 회계에 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7. 감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8. 회사는 부패 근절을 위해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한다.

제 13 조(외부감사인)

1.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주주총회에 참석시켜 제출된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주주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외부감사 활동 중에 외부감사인이 확인한 중요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ESG 기반의 지속가능경영

제 14 조(ESG 경영체계)

회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ESG 요소를 기업지배구조에 통합한다.

제 15 조(ESG 위원회)

1. ESG 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서, 등기임원으로 구성되며, ESG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능한다.
2. ESG 위원회는 필요시 ESG 경영의 전략, 정책, 목표 및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리스크 및 이슈를 점검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3. ESG 위원회의 실무적 실행과 운영은 관리본부가 주관하며, ESG 관련 자료의 취합, 실적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16 조(지속가능 공시 및 소통)

회사는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주주·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제 6 장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제 17 조(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1. 이사회와 경영진은 회사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또는 우려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ESG 경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상당한 수준의 반대가 있었던 안건에 대해 사후 검토하여야 한다.

제 18 조(정보공개)

1.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해관계자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적시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4.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6. 회사는 공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및 개정)

1. 본 헌장은 2025 년 8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헌장의 개정은 ESG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며, 본 헌장은 회사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제 2 조(세부이행 기준)

본 헌장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며, ESG 관련 경영의 세부 이행 기준과 실무 절차는 회사가 제정한 'ESG 관련 규정을 포함한 사내규정 및 정책'을 따른다.